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angladesh: Transfer pricing inquir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pril 15th, 2020\)](#)

방글라데시: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현황 조사

방글라데시 국세위원회(National Board of Revenue, 이하 "NBR") 산하 이전가격실(Transfer Pricing Cell)은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다국적기업들에게 이전가격과 관련된 질의를 개시하였습니다.

NBR 산하 이전가격실은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세법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 921개사에 사업 내용과 관련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된 정보는 주주현황, 사업 운영 기간, 사업 활동, 임직원 현황, 고위 임원의 이름, 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 방글라데시 내 사업 경비와 관련된 보고서 등 납세자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April 27th, 2020

KEY CONTACTS



[강길원 본부장\(부대표\)](#)

(Tel: 02-2112-0907)



[백승묵 상무이사](#)

(Tel: 02-2112-0982)

또한 NBR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전가격실을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이전가격실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 규모의 정확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전가격 조작으로 인한 거래 기반 자금 세탁 및 관계사 간 상품 가격 조작을 통한 관세포탈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이전가격실은 인도, 스리랑카 등 이웃 국가들의 관세법을 검토하고 향후 진행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Kazakhstan: Multilateral instrument \(MLI\) is ratified \(March 31st, 2020\)](#)

카자흐스탄: 다자간 협정 비준안 통과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0년 2월 20일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MLI") 비준안을 통과시켰으며, MLI의 발효로 인해 카자흐스탄 조세조약 신청을 위한 진행절차가 변경됩니다.

탈세 및 조세회피와 같은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MLI는 서명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한해 적용되며, 서명국은 모두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서명국 중 양 당사국이 적용하고자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당사국 간에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MLI는 카자흐스탄이 OECD에 국회비준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됩니다. 원천징수세 관련해서는 발효된 이후 다가오는 첫 해의 1월 1일, 기타 세금 관련해서는 발효된 시점부터 6개월 기간이 경과된 뒤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국외거래의 세무처리는 현지 조세법, 관련 조세조약 및 (거래 상대 국가의 MLI가 부합하는 경우) MLI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UAE: "Substance over form" approach, economic substance \(April 16th, 2020\)](#)

아랍에미리트: 경제적 실질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배경

모든 아랍에미리트 법인에 대한 "경제적 실질" 규정은 2019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실질 규정에는 광의적으로 임직원, 토지, 경영 및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규정 준수를 위해 다양한 신고의무가 존재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제적 실질 규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이사

(Tel: 02-2112-0277)

Commission)의 우려로 인해 아랍에미레이트가 'EU 조세 정책에 대해 비협조적인 조세관할권 명단(EU's list of 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에 포함된 데에 대한 대응 방편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동 규정은 입법 체계를 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보다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질과세원칙”접근법

2020년 4월 15일 아랍에미리트 재무부(The UAE Ministry of Finance)는 아랍에미리트 법인이 경제적 실질 규정 적용가능성 평가 시 “실질적(substance over form)”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관련 활동 지침(Relevant Activity Guide)”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아랍에미리트 소재 법인이 관계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각 사업면허에 기재된 활동과 무관하게 “실질적” 접근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모든 수행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기간 동안 회사(licensee)가 여러가지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중요성 관점에서 해당 활동이 주요 활동의 보조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각각의 활동에 대한 실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조적인 활동에 대해 통합적으로 신고(consolidated reporting) 하는 경우 각 활동별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한 상황, 예를 들어 은행, 리스 금융, 본사 지원, 유통 및 서비스센터 운영 활동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활동 지침의 주요 특징으로는 핵심 이익창출 활동의 실재성 테스트와 해당 활동의 주요 의사 결정 담당자 요건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사점

해당 지침은 회계기간 동안 소득이 실현되는 방식과 상관없이 특정 활동으로부터 총소득이 창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활동의 경제적 실질이 요구된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South Africa: Reminder of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compliance requirements \(April 3th, 2020\)](#)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전가격보고서 작성의무 이행 요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이하 “SARS”)은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지연 혹은 제출되지 않은 납세신고서와 납세액에 대한 기간연장 혹은 감면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였습니다. 해당내용은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의무 이행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전가격보고서 작성의무 이행 요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납세자는 다양한 요건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잠재적 대상 거래*” 규모가 1억 랜드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 총액이 1억 랜드를 초과하거나, 합리적으로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대상이며, 특수관계자간 거래 금액이 상계처리 되지 않은 총액을 기준으로 함.

한 해 동안 총 1억 랜드를 초과한 거래가 있는 납세자는 SARS가 공표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형식과 일치하는 이전가격보고서를 전자적으로 (electronically) 준비하여 SARS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해당 과세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준비 및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특정 이전가격 관련 문서를 준비하고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5백만 랜드를 초과하거나 합리적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별거래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의 추가 문서화 요건이 존재합니다.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CbCR Notification)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

100억 랜드(또는 7억 5천만 유로에 상응하는 금액)를 초과하는 매출규모를 지닌 다국적 그룹사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거주 납세자는 그룹사의 타 법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된 형식으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정보 등 이미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국가별보고서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SARS에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SARS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는 지정된 SARS 이메일 주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업데이트된 법인 소득세 신고서(Form ITR14)에서도 국가별보고서 관련 내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시사점

현재 업데이트된 ITR14 양식은 이메일 제출 시 사용되는 동일한 세부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와 별개로 여전히 SARS의 지정된 이메일을 통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준수하는 것이 신중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

동 제출기한(해당 회계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닌 남아프리카공화국 거주 납세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1억 랜드 규모의 잠재적 대상 거래와는 별개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거주 납세자는 SARS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사점

12개월 제출 기간 요건은 100억 랜드(7억 5천만 유로에 상응하는 금액)를 초과하는 매출규모를 지닌 다국적 그룹사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거주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그룹사 법인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ITR14 연간 법인세 신고서 상 이전가격 관련 공시**

법인 소득세 신고서(Form ITR14)에는 국외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납세자가 답변해야 하는 다수의 이전가격 관련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이전가격 위험평가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면밀하고 정확하게 답변되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서는 해당 과세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이전가격보고서나 이전가격 관련정보 제출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는 납세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ARS는 기존 제출기한 관련 일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제출기한 준수관련 처벌이 더 엄격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ack to top](#)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app

